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4. 19 선고 2022가단122064(본소), 2022가단128192(반소) 판결
[매매대금반환 · 납품대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양

담당변호사 이승채, 이덕희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카이로스

담당변호사 김한목

변 론 종 결 2024. 3. 22.

판 결 선 고 2024. 4. 19.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6,842,3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중 9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36,842,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6,842,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

1) 원고는 2022. 4. 초순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C 공장에서 사용할 산업용 벨트 구매·설치 견적을 의뢰받았고, 2022. 4. 14. 피고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에서 일하는 D에게 그 견적을 의뢰하여 2022. 6. 21. 피고로부터 제품 견적을 받았다.

2) 원고는 2022. 6. 28. C과 C 공장에 산업용 벨트를 설치해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22. 7. 20. 원고에게 EC254TR (커브) 두께 13mm Pitch 1인치 Blue 650W*1M 142M, EC254TR Sprocket 9T*외경75.56*30PI*Key8 91개, SM127 FG (직선) 두께 7.6mm Pitch 0.5인치 BLUE 647.7W*1M 319M, SM127 Sprocket 15T*외경61.9*30PI*Key8 244개의 금액이 73,684,6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라는 견적서를 보내주었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견적서와 동일한 내용의 발주서(금액은 0원이나 금액 부분도 다툼 없음)를 보내줌으로써 위 물품(이하 ‘이 사건 벨트’라 한다)에 관한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이행 경위

1) 원고는 2022. 7. 20. 피고에게 물품대금으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물품대금의 절반인 36,842,3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직후 터키국의 E 브랜드인 이 사건 벨트에 관한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수입절차를 진행하였다.

2) 원고는 이후 이 사건 벨트를 C 공장에 설치하려 하였으나, C은 2022. 8.경(아직 이 사건 벨트가 국내로 들어오기 전이다) 이 사건 벨트가 독일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제품 설치를 미리 거절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기존에 D을 통해 독일산 산업용 벨트를 매수한 적이 있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도 C에 C의 요구 수준에 맞춘 독일산 산업용 벨트를 납품하고자 피고의 임직원인 D에게 연락한 것이다. 즉 원고는 독일산 산업용 벨트를 구매하고자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려 한 것이고, 피고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벨트는 터키산이었고 품질도 C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기에 원고는 결국 C에 이 사건 벨트를 납품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22. 9. 2.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하여 이 사건 벨트를 C에 납품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 물품대금 36,842,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D이 과거에 독일산 산업용 벨트를 취급하는 F에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2021. 6.경부터는 피고의 개인사업체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국내외 여러 국가의 산업용 벨트를 수입하여 납품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원고도 잘 알고 있었다. 피고는 최초 원고의 견적 요청이 있을 때부터 거래 예정인 이 사건 벨트가 터키산임을 알리면서 카탈로그와 견본을 건네주었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오간 견적서 및 발주서의 품목과 규격은 모두 위 카탈로그에 따른 것이다.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벨트의 제작국이나 사양 등을 속인 바가 없고, 원고도 제반사항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이 사건 벨트의 수령을 거절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존 물품대금 36,842,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합의 해제 주장에 대한 판단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므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제가 성립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3044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증인 D, G의 각 증언에 의하면, D은 2022. 9. 2. 원고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계약이 실효되는 경우 피고가 지급받은 물품대금 36,842,300원의 처리 방안에 관하여 이야기하였고, 2022. 9. 5.에도 원고 측인 G에게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D은 원고 대표이사와의 대화 과정에서 ‘일부는 돌려주고, 일부는 남겨놓고’라는 말을 하였는바, 위 말의 의미는 피고가 지급받은 물품대금 중 일부는 추후에 원고가 다시 피고와(혹은 피고를 통해 다른 업체와) 산업용 벨트를 거래하는 비용으로 상계하는 방법으로 반환하자는 것이고, 이러한 D의 의사는 G와의 대화에서 도 다르지 않은데, 원고가 위와 같은 D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거나 D의 제안에 따른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한 이상 D이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관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기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C에 산업용 벨트를 납품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벨트가 터키산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벨트를 C 공장에 설치하려 하였으나, C은 이 사건 벨트가 독일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제품 설치를 거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D이 독일산 산업용 벨트를 취급하는 F에 근무할 당시 원고와 독일산 산업용 벨트 거래를 취급한 일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C의 원고에 대한 제품 설치 거절이 정당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법원의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C은 최초 납품받고자 하는 산업용 벨트의 제조사를 ‘H(타사 제품 동급이상 사용가능)’이라 하였을 뿐, 제작국을 특정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벨트가 H 제품보다 품질이 낮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C의 원고에 대한 제품 설치 거절이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D이 이 사건 계약 전 원고 회사에 방문하여 납품하려는 제품의 카탈로그와 견본을 건네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견본은 차치하고서라도 D이 건네준 것으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카탈로그(을 제2, 3호증)를 면밀히 살펴보면, 원고가 납품하려는 산업용 벨트의 제조사가 터키국의 회사임을 쉽게 알 수 있고, 적어도 이를 숨길 수는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이 법원의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 또는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벨트가 독일산이라고 기망하였다거나 기타 이 사건 벨트가 C의 요구 수준에 미달하는 등으로 납품이 거절될 수 있음을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착오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C에 산업용 벨트를 납품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벨트가 터키산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벨트를 C 공장에 설치하려 하였으나, C은 이 사건 벨트가 독일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제품 설치를 거절한 사실, D이 독일산 산업용 벨트를 취급하는 F에 근무할 당시 원고와 사이에 독일산 산업용 벨트 거래 업무를 담당한 일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증인 G의 증언과 이 법원의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22. 5. 11. C에 견적서를 제출¹⁾ 하면서 벨트를 ‘H 벨트, 독일제품’이라고 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카탈로그의 제공 사실 및 그 내용, C의 원고에 대한 제품 설치 거절이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정당성 여부를 불문한 최종 수요처의 물품 수용이 계약의 동기로 표시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관련된 사항에 어떠한 착오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어떠한 착오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카탈로그의 제공 사실 및 그 내용, 원고가 D으로부터 위 카탈로그를 제공받은 시기(2022. 6. 21.)와 원고와 C 사이의 설치 계약 체결일(2022. 6. 28.) 및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일(2022. 7. 20.)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있어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 전에 C에 이 사건 벨트를 납품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던 점, 원고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오래 전부터 산업용 벨트에 관한 거래를 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착오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이 이유 있기도 하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물품대금 73,684,600원 중 절반인 36,842,3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36,842,3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더하여 손해배상으로서 위 나머지 매매대금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한다. 그러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시적으로 당사자 일방의 의무의 이행 제공이 있었으나 곧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되어 더 이상 그 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된 이후에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다266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8, 9, 1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22. 10. 13. 원고에게 이 사건 벨트를 2022. 10. 25.까지 납품하고자 하니 납품 일자를 알려달라고 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벨트의 납품을 거부한 사실, 피고가 현재도 이 사건 벨트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2. 12. 28. 무렵 내지 그 이후에 이 사건 벨트 납품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계속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의 답변서, 반소장, 준비서면 모두 이 사건 계약이 실효되었다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다는 내용일 따름이다). 따라서 피고의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었다고 항변하나, 이러한 항변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현준

1) 견적서 발행일은 2020. 6. 26.이나 위 증거에 의하면 위 견적서 제출일은 2022. 5. 11.인 사실이

인정된다.